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26년 권선구 및 수원시 긴급누수복구 공사(4차 및 동절기)(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입찰 참여시)

다음의 **기능인력 확인서 및 증빙자료는 착공 시 발주부서로 방문 제출하시고, 장비 보유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발주부서로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처리함.** [긴급 누수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보유인력 및 장비는 타 긴급 누수복구 사업과 중복될 수 없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배관공(수도) 1명, 보통인부 1명. (2개조)**

 (성명,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3종)**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장 비 류 (13)	굴 삭 기	4.5ton(3W)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덤 프	4.5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80kg	2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엔진 양수기	50m/m 이상	3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2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2이상	대	사 진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15~50m/m	각 1이상	세트	사 진
	압착 공구	스텐레스용	1이상	세트	사 진
	잔류염소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청 음 봉 (누수탐지기)		1이상	대	사 진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원본) 첨부 (착공일로부터~준공예정일까지)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보드판사용)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서류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개찰 이후에 현장 실사하며, 장비는 일정장소에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실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연락)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1개의 사업 당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 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현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 누수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긴급 누수 복구시 필요에 의해 수원시 전역에서 누수복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야간대기 및 휴일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60분 이내 관할

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4인 이상을 원칙(장비 및 덤프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대기시간

야간 및 휴일대기는 매일 오후 일과 후부터 오전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 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라. 대기료 지급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비상출동 대기원의 대기료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분)에서 조사 공표한 **보통인부 1일 (주간 단가 적용) 노임단가로 한다.**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누수복구자재는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6.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보행안전관련 교육 필하여 교육증첨부**)
5)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6)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8)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공사안내판(수기입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터파기 및 포장복구 진행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토록 측정기(스타프등)로 측정후 정확한 가로,세로,깊이등의 사진을 제출한다.

8) 누수복구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는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작업시작 및 완료 시간을 기재한다.

9)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구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시 공 자	○○건설

마.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9.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의 근로)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시간이 작업 전체 시간중 1/2이상이 야간에 해당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최초 및 최종작업시간이 야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누수복구 작업시간 전체를 야간작업으로 본다.

다.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라.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마. 설계내역서 상 야간 및 휴일(공휴일포함) 단가 적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공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필히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시 해당 공정에 대한 대금청구는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시공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바. 누수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출동 시 시공사는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민원발생 시(휴일 및 야간) 당직실 직원이 우선적으로 현장확인 해야하나, 긴급누수가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현장확인이 늦어질 경우 시공사가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실 및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때 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업차량 2시간(사진첨부)으로 산정한다.(단 누수 발생하여 누수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	제 재 항 목	벌 점
1	○ 허위로 작업 보고시	매회 20점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매회 20점
3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매회 50점
4	○ 발주처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연락두절 및 출동지연이 1시간 이상일 경우	매회 20점
5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매회 20점
6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매회 10점
7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매회 10점
8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매회 10점
9	○ 단수작업 및 제수밸브 조정 등을 감독보고 없이 시행	매회 10점
10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매회 10점
11	○ 인력 및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매회 10점

2)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나. 입찰참여 제한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원시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실벌점의 누계점수 50점에 도달한 경우

◦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2) 특히,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연락두절 및 출동지연이 3시간 이상일 경우 1년간 입찰참여 제한 및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1.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60분 이내에 출동하여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누수지점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후속 공사를 진행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누수복구 후 최종포장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포장을 실시하고, 포장노면은 기존포장면가 일치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단, 포장면이 불량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아.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작업시행 과정에서 수돗물로 인해 인근건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카.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한다.

파.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3.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익일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한다.

(단,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